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공간·환경에 대한 통합적 관리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정책관등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국가유산청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국가유산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국가유산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궁능유적본부의 정원 1명(4급 1명)을 상호 이체하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필수보존요소 지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를 영향진단 관련 검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의 정원 3명(5급 2명, 연구사 1명) 및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칠백의총관리소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가유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11.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문화유산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제10조제2항(중전의 제1항) 중 “국장”을 “국장 및 정책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제5호 중 “국보·보물·사적·국가민속문화유산”을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유산”을 “유형문화유산과 민속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국립고궁박물관·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만인의총관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를 “국립고궁박물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사적의 지정·해제·보존·관리와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 7의2.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념물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8. 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만인의총관리소·국립해양유산

연구소의 지도·감독

제12조제2항제3호 중 “수립·조정”을 “수립”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장의2(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의2 평가대상 조직

제44조의2(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의2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342”를 “34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41”을 “34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4”를 “5”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14”를 “2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7”을 “16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60”을 “159”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유산청의 정원 3명(5급 2명, 연구사 1명)과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의2]

국가유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4조의2제1항 관련)

조직	정원
문화유산국 1개 정책관등	1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문화유산국) <신 설></p> <p>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p> <p>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4. (생 략)</p> <p>5. 국보·보물·사적·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해제·보존·관리와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p> <p><신 설></p> <p>6. (생 략)</p> <p>7.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p>	<p>제10조(문화유산국) ① 문화유산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p> <p>② 국장 및 정책관등----- ----- -----.</p> <p>③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유산----- ----- -----</p> <p>5의2. 사적의 지정·해제·보존·관리와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p> <p>6. (현행과 같음)</p> <p>7. ----- ----- -----</p>

라 한다)가 지정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8. ~ 16. (생략)

17. 국립고궁박물관·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만인의총관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지도·감독

<신 설>

제12조(무형유산국) ① (생략)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무형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4. ~ 14. (생략)

제13조(위임규정) <신 설>

----- 유형문화유산과 민속문화유산-----

7의2.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념물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 16. (현행과 같음)

17. 국립고궁박물관-----

18. 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만인의총관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지도·감독

제12조(무형유산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수립 -----

4. ~ 14.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두

(생략)

<신설>

<신설>

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2장의2 평가대상 조직

제44조의2(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가유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42</u>	<u>343</u>	+1
·	·	·	
·	·	·	
일반직 계	<u>341</u>	<u>342</u>	+1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 또는 연구직	<u>4</u>	<u>5</u>	+1
·	·	·	
·	·	·	

[별표 2]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14</u>	<u>213</u>	-1
·	·	·	
·	·	·	
일반직 계	<u>167</u>	<u>166</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60</u>	<u>159</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3